



시사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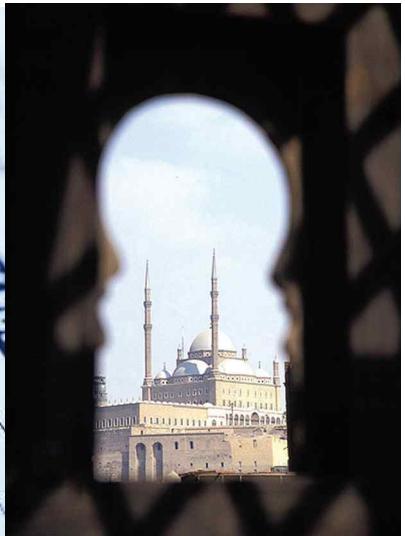
## 수쿠크법 반대, 문제있다!

기독교계 반발로 인해 수쿠크법안 상정이 보류되었다. 그러나 종교계의 부당간섭이라는 사회적 비판이 만만치 않다. 왜 교계 원로들이 수쿠크법을 반대하는가? 이러한 반대가 적절한가?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기독교인의 건전한 참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글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WORLDVIEW COLUMN



### 수쿠크법 준비 배경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9년 9월에 이슬람자금 유치를 위해 이슬람채권(수쿠크, sukuk)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등록세 등의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슬람금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수쿠크법')을 마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상정하려 했다.

우리 정부가 법개정을 통해 이슬람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풍부한 자금 때문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오일머니가 쌓여 중동자금이 매년 15%씩 성장해 올해 전체 시장규모는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 자본시장의 큰 손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풍부한 자금 덕분에 이슬람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회사채에 비해 0.1~0.2% 포인트 정도 낮다. 풍부한 자금에도 불구하고, 샤리아(이슬람율법)는 이자를 금지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이 낙후되어 중동자본시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시아의 회교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금융허브가 되려고 하며, 중국과 일본도 이에 가세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유럽지역에서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가 되겠다고 경쟁하는 등 이슬람자금 유치는 새로운 국제금융트렌드가 됐다. 우리 정부도 2008년에 이슬람 중앙은행들의 국제기구인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 · 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에 준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대우, 신한, 우리, 한국 투자증권 등 국내증권사들도 3~4년 전부터 말레이시아와 제휴를 맺고 이슬람 자본 유치를 준비했다.

두 번째 이유는 외화조달 통로의 다변화를 위해서이다. 지난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과 유럽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 외화유동성의 취약성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외자금 조달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이슬람 금융이 장기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헤지펀드 규모는 날로 커지기 때문에 소규모 개방경제는 헤지펀드 공격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는 다른 외화 표시채권과 달리 반드시 실물투자를 수반하기 때문에(박스 설명 참고) 급격한 유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유리하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화학기업인 사비(Sabic)은 20년 만기 수쿠크를 발행했다.

마지막 이유는 중동지역의 건설 수주 등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수쿠크 발행



을 통해 이슬람계 투자자들에게 신뢰와 인지도를 높이고,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 중동지역 플랜트 등 건설수주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된다.

### 왜 세금을 면제하는가?

논란의 중심은 세금면제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이자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이슬람권에서는 모든 금융상품은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에 위배되지 않는지 심사받아야 한다. 샤리아에서는 이자를 수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자본거래에는 일종의 편법이 사용된다. 샤리아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자본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이슬람채권이 수쿠크다. 이슬람율법 샤리아에 의하면 이자는 지급할 수 없지만 실물자산에 대한 임대료 등은 지불할 수 있다. 이점에 착안하여 수쿠크 발행자는 이자를 지급할 수는 특수목적회사(SPV: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세워 투자자와 실물자산을 거래하는 형태로 수수료를 주고받는다. 이는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금을 채권보유자들에게 돌려주는 자산담보부증권(ABS)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다 (수쿠크의 원리는 박스 기사 참고). 따라서 수쿠크는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는 채권이지만, 실물자산투자로 얻은 수익을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펀드'와 비슷하다. 따라서 다른 외화표시채권처럼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옳은가 하는 논란이 생기는 것이다.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이므로 세금이 없는데, 아래 박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자

### 수쿠크 발행 원리

수쿠크 발행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차입자는 한국기업, 투자자는 이슬람은행이라고 하자. 한국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이슬람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면 간단하지만, 이슬람은행은 이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특수목적회사(SPV)를 둔다. SPV는 ①스쿠크를 발행하고 이슬람은행으로부터 ②투자를 유치한다. 이 돈으로 차입자인 한국기업으로부터 ③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④임대를 한다. 계약기간 중에 SPV는 한국기업에게 ⑤임대료를 받아, 이슬람투자자에게 ⑥수익의 형태로 지급한다. 만기일이 되면 이 부동산을 ⑦한국기업에게 다시 팔고, 받은 ⑧자금을 가지고 스크루 투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돈의 흐름만 있으면 되는데,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라는 부차적인 방법이 동원된다.





대신 임대료 명목으로 지불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매매하고 임대를 해야 하는데, 이때 자산 매입시 취득·등록세가 붙고, 자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그리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발생된다. 이 세금을 다 부담하게 되면 수쿠크는 사실상 일반 해외채권보다 4% 정도 높은 금리를 줘야 한다.

우리 정부는 수쿠크는 이자소득을 금지한 이슬람율법에 맞춰 이자 대신 배당을 주는 형태로 변형됐을 뿐 다른 외화표시채권과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하고, 조세특례개정안에 수쿠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이슬람채권이 받지 못하는 면세 혜택을 주어 역차별을 고치자는 취지이다.

### 정치권에서 반대 이유

스쿠크법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하지 못한 이유는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반대했기 때문이다. 반대에 앞장 선 한나라당 이해훈 의원은 이슬람 자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수주하는 대가로 공사비를 대출해주기로 했는데, 이에 소요될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종교에 편의를 제공하면서 법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동지역에 플랜트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이슬람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려고 과세특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쿠크 면세 혜택을 주는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단 3곳뿐이고, 그것도 일부 중복과세에 해당되는 부분만 면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 기독교계의 개입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의 반대는 기독교의 반대를 의식한 면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교계의 양대 협의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과 한국교회협의회(KNCC) 모두 반대하기 때문이다. 길자연 한기총 회장과 산하 교계 대표 7명은 한나라당사를 찾아가 이슬람채권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으며, 안상수 대표는 교계의 뜻을 담당 상임위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KNCC 신임 회장 취임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민주당 정세균, 조배숙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기 목사는 축사 중에 “정부가 이슬람 지하자금을 받기 위해 이슬람을 지지하는 일이 생기면 철저히 이 대통령과 현 정부와도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교계 원로들의 수쿠크면세에 대한 반대 명분은 수익금의 일부가 테러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쿠크 발행에 따른 수입의 2.5%는 구제를 위한 구빈세(求貧稅)인 ‘자카트(Zakat)’란 명목으로 자선단체에 전달된다. 그런데 송금기록은 바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시 되고 있다. 수쿠크 발행과 운용을 맡는 ‘샤리아위원회’가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와 연결돼 있는데, 그 내역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언론에서도 테러 자금줄이라는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교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테러보다는 이슬람 세력이 우리나라에도 확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자금을 이슬람화를 위한 ‘금융지하드’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영국이 이슬람 금융 도입 뒤에 교회들이 다 모스크로 바뀌었고 이것을 근거지로 과격세력들이 테러가 따랐으며, 프랑스도 이슬람 금융을 허용 후 무슬림청년들의 시위로 사회적인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도 있다.



## 마치는 글

지금까지 수쿠크법 배경과 반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반대 이유의 적절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특히 기독교계가 경제문제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근거가 약하다고 본다. 수쿠크는 1990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발행하면서 시작되었고, 말레이시아가 전 세계 수쿠크 발행의 68%를 차지한다. 그리고 세계로 확대 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선진국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영국은 2003년, 싱가포르는 2005년에 수쿠크 거래를 허용했고, 미국도 2009년 11월에 처음 발행되었다. 프랑스도 시행령을 통해 면세 조치를 했으며, 일본 역시 올해 면세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수쿠크 면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연합(UN)에서도 인정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를 특혜로 보는 것은 수쿠크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테러와 전쟁을 치르는 미국은 물론이고 가장 반이슬람적인 유대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마저 수쿠크 발행으로 이슬람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슬람 자본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인정된다. 수쿠크의 장기선호성이나, 우리나라의 외화도입 다변화 전략 등의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

이슬람을 포함한 해외근로자가 늘어나는 현재 상황에서 기독교계가 이슬람 포교 확산을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 유럽의 경우 해외근로자의 70~80%가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이슬람 포비아(공포증)에 사로잡혀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중에 이슬람은 10%에 불과하지만, 급속하게 이슬람 세력이 확산되고 있고, 이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슬람교세 확산을 막는 방법으로 수쿠크법 반대운동이 효과적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신정일치인 이슬람국가들이 포교를 위해서 돈을 보내려면 얼마든지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구빈세인 자카트는 십일조와 비슷해서, 이슬람교인의 5대 의무 중 하나로 수쿠크에만 의무적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석유 수입시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이 자카트라는 이름으로 기부된다. 따라서 자카트를 막으려면 원유수입도 하지 말고, 중동 건설진출도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해외건설 수주에서 이슬람권인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에 이르는데, 이를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카트는 국가에서 승인받은 정규 단체에만 전달되고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에 악용될 소지는 적다. 사실 이것이 테러자금과 연계되어 있다면 테러에 민감한 미국이나 영국에서 수쿠크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수쿠크법에 대한 일부 교계 원로들의 대응을 보면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너무 노골적 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수의 표를 의지해서 정부를 협박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방식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방동설목사의 <십자군이 아니라십자가의 정신입니다>라는 책이 있다. 기독교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힘이나 돈으로 밀어붙이는 십자군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평신도 전문가들이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듦다.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금융계 종사자 중에 기독교인들도 많은데, 왜 사전에 그들의 자문을 받지 않았는가 의문이 듦다. 갈수록 전문화되는 시대에 각 분야의 기독교인 전문가들과 교회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 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과 관련한 기존 원고를 보시려면 쪽지 QR코드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